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2. .

제 안 자 : 정무위원장

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제재 대상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‘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’ 및 ‘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’와 관련하여 횡령·배임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한편, 행정제재 대상 등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50조의3제2항 등).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0조의3제1항 중 “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, 배임, 증여”를 “횡령, 배임,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.

1.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
2.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

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”를 “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66조 전단 중 “협회”를 “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”으로 한다.

안 별표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7의2.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횡령, 배임, 증여, 뇌물의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<u>제50조의3(수뢰 등의 금지)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, 배임, 중여, 그 밖에 뇌물의 수수,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<u>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.</u>	제50조의3(수뢰 등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<u>횡령, 배임,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중여-----</u> ----- ----- -----. <u>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.</u> <u>1.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 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</u> <u>2.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</u>

제53조(감독) ① ~ ③ (생략) ④ 금융위원회는 <u>여신전문금융회사</u> <u>등과 부가통신업자</u>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⑤ · ⑥ (생략) 제66조(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) <u>협회</u>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	제53조(감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제66조(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) (현행과 같음)	<u>조제3호의 보조</u> <u>사업자로서 수행</u> <u>하는 업무</u> 제53조(감독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----- <u>여신전문금융회사등</u> <u>과 부가통신업자</u> <u>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⑤ · ⑥ (개정안과 같음) 제66조(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) <u>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</u>-----
--	---	--

를 준용한다. 이 경 우 “여신전문금융 회사등과 부가통신 업자”는 “협회”로 본다.		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	--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31.

발 의 자 : 강훈식 · 이개호 · 김용만
민형배 · 민병덕 · 김남근
이강일 · 남인순 · 문진석
윤준병 · 강준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·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
에 대해 면직, 정직,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.

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, 369억3,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.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.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,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.

반면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나 「상호저축은행

법」은 횡령·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“별표”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.

이에 따라 카드사·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·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「상호저축은행법」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·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행정제재 대상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‘기부금 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’ 및 ‘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’와 관련하여 횡령·배임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한편, 행정제재 대상 등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50조의3제2항 등).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3(수뢰 등의 금지)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, 배임,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, 그 밖에 뇌물의 수수,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준용한다.

1.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
2.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

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”를 “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66조 전단 중 “협회”를 “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”으로 한다.

별표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7의2.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횡령, 배임, 증여, 뇌

물의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0조의3(수뢰 등의 금지) ① 여</u> <u>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</u> <u>무와 관련하여 횡령, 배임, 직</u> <u>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,</u> <u>그 밖에 뇌물의 수수, 요구 또</u> <u>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<u>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</u> <u>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</u> <u>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</u> <u>준용한다.</u> <u>1.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</u> <u>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</u> <u>에 관한 업무</u> <u>2.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</u> <u>수행하는 업무</u>
제53조(감독) ① ~ ③ (생 략) ④ 금융위원회는 <u>여신전문금융</u> <u>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</u>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제53조(감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여신전문금융</u> <u>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(그 소</u> <u>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

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⑤ · ⑥ (생략) 제66조(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 사) <u>협회</u>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”는 “협회”로 본 다.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제66조(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 사) <u>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</u>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